

【 최근 개정된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16. 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재 예방보상정책국

2015.12.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16.2.11.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개정 배경,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일선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목 차

제1편 개관	1
제2편 주요 개정내용	6
I. 법률 제13906호(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신설	6
2. 건설공사 도급 시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11
3.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 및 제재	14
4. 직무교육 의무 주체 명확화 및 직무교육 대상 확대	17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록 결격사유자 변경	22
II. 대통령령 제26985호(2016. 2. 17. 공포·시행)	
1.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23
2.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안전·보건교육 실시 ...	25
3.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확대	27
4. 석면조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30
5.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	33
6. 석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제도 정비	36
7.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확대	39
8. 공정안전관리 대상 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	42

Ⅲ.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50호(2016. 2. 17. 공포·시행)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시기 명확화	45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	48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	58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	61
5. 산업재해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63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유효기간의 적용제외 근거마련	65
7.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의 면제 대상 조정	67
8.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	70
9. 공정안전보고서 보존기간 개선	73
10.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기 단축, 민간 전문가 범위 확대 및 확인 생략 근거 마련	75
1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입력 의무화	79
1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개정	81
1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개선	83
14.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기준 정비	87

Ⅳ.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144호(2015. 12. 31. 공포·시행)

1. 계단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개선	91
2. 밀폐공간작업 시 송기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	94

제1편 개관

I. 법률 제13906호(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

□ 개정이유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제16조의3).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제29조의4)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

II. 대통령령 제26985호(2016. 2. 17. 공포·시행)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추가 (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

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 (별표 3 제41호)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

- 지금까지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철거 등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

Ⅲ.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50호(2016. 2. 17. 공포·시행)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기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시기 등의 명확화 (제32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시기 및 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명세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도록 하되,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성하도록 함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 시 제출 서류의 조정 (제86조 및 안 별표 11의4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의 범위를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제130조의7제2항)
 - 지금까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첫 번째 평가 후 4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

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별표 12의2제4호가목)
 -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IV.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144호(2015. 12. 31. 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 기둥이 25센티미터 이하의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근로자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의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제629조)

제2편 주요 개정내용

I. 법률 제13906호(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신설(제16조의3 신설)

□ 현행규정

-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에 취약

□ 문제점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의 재해율 격차*가 높은 상황임에도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구성 의무가 없음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3.31배		3.42배		3.59배		3.92배		3.71배		3.44배		3.17배

□ 개정내용

-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언·지도하도록 함(제16조의3제1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에 규정(제16조의3제2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자율안전보건관리 여건이 조성되고 산업재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2016.10.28.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u></p> <p><u>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u></p> <p><u>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입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 8. (생략)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 7. (생략)
- ② ~ ⑦ (생략)

제7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 7.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2. (생략)</p> <p>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중간생략)...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p> <p>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5. ~ 7. (생략)</p> <p>⑤·⑥ (생략)</p>	<p>④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 -----</p> <p>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 -----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2. 건설공사 도급 시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화(제29조의4 신설)

□ 현행규정

- 발주자의 귀책 또는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시공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당초 계약한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음

❖ 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 문제점

- 발주자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더라도 시공자는 당초 계약한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

* '13.12.19 부산 남북항대교 교량붕괴(사망 4명), '13.5.10. 당진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사망 5명) 등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발생

- 따라서 산재예방을 위해서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

*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14.1.3)」에 포함된 내용

□ 개정내용

-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 부과

*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구 또는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

□ 기대효과

- 시공자에게 적정 공기를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16.10.28.)부터
- (적 용 례) 시행일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		

	<p><u>치를 하여야 한다.</u></p> <p>1. <u>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u></p> <p>2. <u>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u></p> <p>② <u>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p>

3.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 및 제재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

□ 현행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관서에 등록하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 문제점

- 인력·시설·장비가 부실하거나 교육과정 운영 부실 등으로 위탁기관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09.8월 지정제 폐지 당시 교육기관은 47개소에서 지정제 폐지 이후 110여개소의 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등록 이후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개정내용

- 사업주는 산안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5항)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31조제6항)

-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32조의2제1항)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규정을 마련함(제32조의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대효과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도입을 통해 부실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기관의 자발적인 시설 및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안전 보건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

□ 시행시기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16.10.28.)부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 ④ (생략)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 ----- -----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

<신 설>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2조의3(준용)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준용)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

-----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

4. 직무교육 의무 주체 명확화 및 직무교육 대상 확대

(제32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호, 제72조제4항제3호, 제72조제5항제4호)

□ 현행규정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 중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상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 주체는 사업주임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관리책임자 등 교육 대상이 의무 주체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 이에 맞추어 직무교육의 수수료 납부 주체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사업주로 수정할 필요
- 또한, 일부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신설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역량 배양을 위해 직무교육 필요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등

□ 개정내용

-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를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하고(제32조제1항)
 - 직무교육 의무 주체를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주체 및 직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또한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안 제66조제1항제2호, 안 제72조제4항제3호 및 제72조제5항제4호)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32조제1항)

□ 기대효과

- 직무교육 의무 주체를 사업주로 명확히 하여 직무교육에 따른 수수료 납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혼선을 예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능력이 제고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16.10.28.)부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u>다음 각 호의 자는</u>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u>받아야</u> 한다.</p> <p>1. <u>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u></p>	<p>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u>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u> 다음 - <u>사람에 대하여</u> ----- <u>이수하도록 하여야</u> -.</p> <p>1. <u>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u></p>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 ⑤ (생략)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략)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3. ~ 13. (생략)

② (생략)

제7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9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수수료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3.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

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 6.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
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
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
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
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
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
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
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
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
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
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
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3. ~ 6. (생략)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제
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 제1
호의 경우-----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p>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5. ~ 7.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4. <u>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u></p> <p>4의2. ~ 13. (생략)</p> <p>⑥ (생략)</p>	<p><u>제16조의3제3항</u>-----</p> <p>-----</p> <p>-----</p> <p>5. ~ 7.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1. ~ 3.(현행과 같음)</p> <p>4. -----<u>(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u></p> <p>4의2. ~ 13.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	---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록 결격사유자 변경

(제52조의4제3항제1호)

□ 개정이유

-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 도입

* 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부칙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잔존

□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록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 기대효과

-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타법과의 일관성 유지

□ 시행시기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16.10.28.)부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u>금치산자</u> 또는 <u>한정치산자</u> 2. ~ 6. (생 략) ④ ~ ⑥ (생 략)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피성년후견인</u> -- <u>피한정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II. 대통령령 제26985호(2016. 2. 17. 공포·시행)

1.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제28조의6)

□ 현행규정

- 프레스, 전단기 등 12종의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12. 사출성형기

□ 문제점

-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에서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빈발

<연도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이동식 크레인	재해건수	31	1	8	8	14	
	재해자수 (명)	계	42	1	10	12	19
		사망	33	1	8	9	15
		부상	9	0	2	3	4
고소 작업대	재해건수	66	16	14	13	23	
	재해자수 (명)	계	87	22	18	16	31
		사망	72	17	16	15	24
		부상	15	5	2	1	7

□ 개선방안

- '이동식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기대효과

-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산재예방에 기여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8.18.)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u>크레인[이동식 크레인</u>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p> <p>4. ~ 12.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u></p> <p>4. ~ 12. (현행과 같음)</p> <p>13. <u>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2.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안전·보건교육 실시 (별표 1)

□ 현행규정

-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0인 이상 사업장만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01년 23.8% → '14년 33.4%)하고 있고,
 - 특히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비스업 전체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음에도 산업안전교육 관련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있음
- * 최근 3년(12~'14년)간 서비스업 평균재해율 0.39, 도매업 0.40, 숙박 및 음식점업 0.69

□ 개선방안

-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 신규 규제임을 감안하여 기준교육 시간의 1/2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 3년간의 규제 재검토 기간을 설정 (2018.12.31.까지)

□ 기대효과

- 서비스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단순·반복형 재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8.18.)부터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00.00>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확대(별표 3)

□ 현행 규정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함

❖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생략)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이상	(생략)

□ 문제점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규칙 제32조제3항)
 - 공사금액 120억 미만 공사현장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기술지도를 받을 의무가 모두 면제(규칙 제32조제3항제4호)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취약
- ※ 터널·교량 및 굴착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주기적인 확인(6월에 1회)을 받고 있음

□ 개선방안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는 안전관리자(겸직 가능)를 선임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기술지도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위험 공사에 대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건설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8.18.)부터 시행
- (적 용 례) 시행일 이후 착공한 공사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 류	규 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 임 방 법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생략)	(생략)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생략)	(생략)
개 정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 류	규 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 임 방 법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4.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별표 13)

□ 현행 규정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함유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법 제38조의2)

-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

(단위: 만원)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일반석면조사		100	200	300
기관석면조사	개인소유 단독주택	500	1,000	1,500
	기타	1,500	3,000	5,000

* 기관석면조사 대상(법 제3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등의 경우 사용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 파이프 보온재호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 일반석면조사 대상(법 제38조의2제1항)

- 기관석면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설비 등을 해체·제거하려는 경우

□ 문제점

- 법 위반 시 공사금액이나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과태료를 부과함

□ 개선방안

- 석면조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부과 금액은 1차 위반에 한하여 공사금액의 5%를 기준으로 차등화 하되,

- 최소 및 최대금액을 설정하여 일반석면조사는 10~100만원, 기관석면조사 중 개인소유 단독주택은 50~500만원, 그 밖의 경우는 150~1,50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 2차·3차 위반은 고의·반복적 위반으로 보아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용

□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 국민들의 제재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적 용 례)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3.(생략)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오. (생략)					
조.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의3		100	200	300
조.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 개인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500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1,500	3,000	5,000
코.~차. (생략)					
개 정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3.(현행과 같음)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오. (생략)					
조.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의3			200	300
조.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3,000	5,000
코.~차. (생략)					

5.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 현행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개정으로 15.1.1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는 1,0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야 하나, 보건관리자 선임 등과 관련한 규정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함
 - * 안전관리자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12조제5항)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외부위탁을 제한(시행령 제15조제1항)

□ 문제점

- 건설업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선임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및 지도·감독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 건설업 보건관리업무를 외부위탁 제한 규정이 없음
- 노사협의체의 사용자 위원에 보건관리자가 누락

□ 개선방안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면제(안전관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정)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조항 중 준용이 누락되어있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조항(시행령 제12조제5항)을 보건관리자에 준용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건설업의 노사협의체 사용자위원회에 보건관리자를 추가

□ 기대효과

-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고, 보건관리자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② (생략)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를 -----.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		

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생략)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생략)

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 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6. 석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제도 정비 (제29조, 제30조)

□ 현행규정

-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등 5종의 석면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시행령 제29조제5호 및 제7호)로 지정하고
- 백석면 및 그 함유제품은 제조 또는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시행령 제30조제13호)로 지정

□ 문제점

- 백석면을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사용 금지함에 따라 현행 허가 대상 유해물질인 백석면을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할 필요
-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화관법 인용 조항을 타법개정*(14.12.9) 하면서 산안법상 금지물질에 ‘제한물질’을 실수로 추가

* 화관법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전	화관법 부칙에 따른 개정 후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제한물질</u>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 금지물질 :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실험·연구 목적을 제외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사용 등이 금지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한 물질 (<예> 어린이용 장남감에 납, 가정용 세척제에 TCE, 금속장신구에 카드뮴 등은 사용금지)

□ 개선방안

- 석면안전관리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백석면을 제조 등의 허가 대상물질(제30조)에서 제조 등 금지물질(제29조)로 함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삭제

□ 기대효과

- 석면 관련 규정을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으로써 법 해석·집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u>청석면 및 갈석면</u> 8.·9. (생 략)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백석면, 청석면</u> ----- 8.·9. (현행과 같음)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p>11. (생 략)</p> <p>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 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2. (생 략)</p> <p>13. <u>백석면</u></p> <p>14. 제1호부터 <u>제11호까지</u> 및 <u>제13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 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 하인 것은 제외한다)</p> <p>15. · 16. (생 략)</p>	<p>11. (현행과 같음)</p> <p>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4. ----- <u>제11호까지</u>----</p> <p>----- ----- ----- -----</p> <p>15. · 16. (현행과 같음)</p>
---	---

7.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확대(제32조)

□ 현행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됨(제32조제4호)

❖ 법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 문제점

- 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이 많으면 유해성·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유해성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유해성·위험성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 현재는 물질의 명칭만 공표를 하면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개선방안

-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수입량이 많아질수록 유해성·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공표 항목에 명칭 이외에 제조·수입량을 추가함으로써,

- 고용부장관이 공표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연간 제조·수입량 이하로 제조·수입한 물질”만을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소핵시험성적서 등)의 종류를 규정

연간 제조·수입량		면제 되는 시험성적서 ※ 의무 제출서류 : 3종 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급성독성
1톤 미만		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1톤~10톤 미만		소핵시험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
고분자 화합물	10톤 미만	급성독성, 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10톤~100톤 미만	소핵시험
	100톤~1000톤 미만	소핵시험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

□ 기대효과

- 연간 제조·수입량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규화학물질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적 용 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u>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u></p> <p>5. (생략)</p>	<p>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u></p> <p>5. (현행과 같음)</p>

8. 공정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 (별표10)

□ 현행규정

- 공정안전관리(PSM)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양을 판단할 경우 '제조·취급·저장량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 하도록 규정

❖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비고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주) C_n :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_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 문제점

- 저장된 유해·위험물질을 원료 등으로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용량과 제조·취급량 각각을 합산하여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과 비교, 공정안전관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 예)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황산 18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저장용기에서 황산 원료를 공급받아 공정에서 하루동안 최대 3톤을 사용하는 설비를 보유한 경우 저장용량(18톤) 및 제조·취급량(3톤)으로 각각을 합산한 21톤으로 해석되는 결과, 황산의 규정량(20톤) 이상으로 제조·취급·저장하여 공정안전관리대상으로 판단될 소지(중복하여 계산할 우려)

□ 개선방안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을 적용(합산 금지)하여 산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공정안전관리 적용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의 혼선 방지

□ 타법사례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RMP)* 제출 대상 판단시 위험물질별 보관·저장수량과 제조·사용수량 기준을 정하고 각각 기준량 초과여부로 대상을 정함(보관·저장수량과 제조·사용수량을 합산하지 않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사고대비별 수량 기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비교</p> <p>1.~4. (생략)</p> <p>6.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u>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u></p>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p>주) C_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_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p>	<p>[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비교</p> <p>1.~4. (현행과 같음)</p> <p>6.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설비로 본다.</p> <p>가. 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frac{C}{T}$)이 1 이상인 경우</p> <p>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유해·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frac{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p>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p>주) C_n: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_n: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p>

Ⅲ.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50호(2016. 2. 17. 공포·시행)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시기 명확화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현행규정

-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감점처분(건당 - 0.5점)을 하고 있으나
 - 법령에서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사용내역서 작성 및 지방관서의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감독 시 혼선을 빚고 있음
 - * 공사현장별로 1주, 격주, 월 또는 분기 등 다양한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가 1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성하도록 함

-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처와 매월 공사비(관리비 포함)를 정산하는 것이 관행이며 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출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매월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매월 작성하도록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에서는 매월 사용내역서 작성을 전제로 사용내역서 양식을 정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지방관서의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감독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 (시행규칙 제86조)

□ 현행 규정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와 시험성적서*(3종) 등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급성독성(흡입 또는 경구)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소핵 시험성적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설치, 보호구 구비 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첨부서류 작성방법>

2.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가.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동물(Rat)을 이용한 소핵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점

- (소량 제조·수입자의 부담 과중) 연간 제조·수입량 등과 무관하게 3종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소량 제조·수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 특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상 1톤 미만에 대해서는 ‘19년까지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함에 따라 산안법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
- *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 해당물질에 관한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등록해야 하며, 제조·수입량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차등 제출
- **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규제개혁 신문고) 등
- (처리기한 미규정) 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 조치사항 통지서의 통보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 보장이 미흡하고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우려
- (위탁제조자 관련규정 미비) 화학물질 정보는 대부분 위탁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주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탁제조자가 직접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실정
- (통지서상 내용별 구분양식 부재) 조치사항 통지서상 ‘조사결과’란*이 단순 두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다수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기 곤란

* 예시) 현행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일부

조사결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사항

** 유해·위험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예방조치 문구 등

□ 개선방안

- (시험성적서 차등 제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3종의 시험성적서 중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등 일부 시험성적서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및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 화학물질 특성 및 제조·수입량을 감안하여 시험성적서를 차등 제출하도록 함(별표 11의4)

《 제출생략 가능한 시험성적서(별표 11의4) 》

연간 제조·수입량		시험성적서*	비고
1톤 미만		복귀돌연변이, 소핵	6호 가목
1톤~10톤 미만		소핵(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	6호 나목
고분자 화합물	10톤 미만	급성독성, 복귀돌연변이, 소핵	8호 가목
	10톤~100톤 미만	소핵	8호 나목
	100톤~1000톤 미만	소핵(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	〃

*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복귀돌연변이, 소핵)는 급성독성과 달리 장기간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생식세포 변이원성^{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임을 감안
 주)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서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

**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미약한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고분자화합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 다만,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6조제3항)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상에 ‘연간 제조·수입량 구분’* 및 ‘고분자화합물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양식 변경*(별지 제18호서식)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개정 별지 제18호 서식 중 일부

현행	⑥ 신규화학물질의 최근 또는 수입 후 3년간의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	년	년	년



개선(안)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년 월 일		
	⑦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단위: 킬로그램 또는 톤)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1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해당	[]해당 없음		

○ (처리기한 명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 통지서를 통보하도록 하되

-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 제출되는 시험 성적서의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제86조제4항)

○ (위탁사업주 관련규정 마련) 위탁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18호서식)

* 조사보고서의 첨부서류에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통지서 양식 변경) 조치사항 통지서상에 유해성·위험성 정보 제공을 위한 구분란 추가(별지 제18호서식)

* 별지 제18호서식('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중 일부

현행	조사결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사항



개선(안)	조사결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사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 기대효과

- 시험성적서 차등제출 및 통지서 통보기간 명시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자의 부담 완화
- 위탁사업주가 직접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의 정확한 조사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유해성·위험성 정보제공 강화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적 용 례) 제8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u>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u></p>	<p>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u>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u> <u>---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u> <u>----- 별표 11의4에</u> <u>따른 서류-----</u> <u>-----</u></p>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 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관으로부터 받은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
-----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
별지 제18호의3서식-----
----- .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참고사항(개정안 별표 및 별지 서식)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86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86조제1항 관련)

1.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 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 성적서 모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지 제18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①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②주소					
수탁 제조자 (신청인이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작성)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①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②주소					
③신규화학물질 명칭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 화학적 성질과 상태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년 월 일					
⑦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정 량(단위: 킬로그램 또는 톤)	[]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⑨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⑩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 ²) 또는 중질지(80g/m ²)]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

(시행규칙 제130조의7제2항)

□ 현행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후 동 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점검 등 차등관리** 수행

*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①신규평가: 확인 완료후 1년~2년 사이, ②정기평가: 평가 후 4년마다, ③재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사업장의 사업주 요청에 따라 실시

** P등급 4년 1회 점검, S등급 2년 1회 점검, M*등급 2년 1회 점검 및 4년 1회 기술지도, M 등급 4년 3회 점검 및 2년 1회 기술지도

❖ 시행규칙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위험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P)등급으로 확정된 사업장이 이후 이행수준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기존 평가등급을 유지하여 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 한번 평가를 받아 우수등급으로 확정되면 4년간 이행상태가 불량해도 특별히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 사업주들이 평가이후에 안전관리에 소홀

□ 개선방안

-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P)등급으로 확정된 사업장이라도 감독, 기술지도 등의 실시결과 이행수준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직권으로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직권 이행상태평가 대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고시)이 정함

□ 기대효과

-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도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을 준수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8.18.)부터 시행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관련 별표 12의2)

□ 현행 규정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월평균 60시간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 규칙 별표 제12의2

4. 야간작업(2종)

-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문제점

-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시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야간근무를 월 평균 4회 이상하더라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기준 “가”, “나”항 모두에서 제외됨

* 시업시간이 22:30, 23:00, 23:30, 24:00으로 탄력적으로 운영(5개 국립대 병원)할 경우 기준 시업시간에서 제외

□ 개선방안

-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기준 중 “가”항을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명확화

* ILO 야간근로 협약(제171호)에서는 야간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작업으로 정의

□ 기대효과

- 사업장마다 다양한 시업시간으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자들이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2의 2]</p> <p>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p> <p>1. 화학적 인자(163종)</p> <p>2. 분진(6종)</p> <p>3. 물리적 인자(8종)</p> <p>4. 야간작업(1종)</p> <p>가. <u>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u></p> <p>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p>	<p>[별표 12의 2]</p> <p>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p> <p>1.~3. (현행과 같음)</p> <p>4. 야간작업(1종)</p> <p>가. <u>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u></p> <p>나. (현행과 같음)</p>

5. 산업재해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3조의2)

□ 현행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3조의2(협조요청)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

- 행정·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에 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 안전처 등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에 어려움이 있어 산재 미보고 관련 조사에 애로 발생

□ 개선방안

- 행정·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국민안전처),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구급차량 등의 「출동 및 처치기록」(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에 대한 사항을 추가

□ 기대효과

-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산재미보고 사업장 적발 및 정확한 산재통계자료 확보를 통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11.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의2(협조요청) ① ----- ----- -----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0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p> <p>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유효기간의 적용제외 근거마련 (시행규칙 제89조)

□ 현행 규정

-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1년간 면제되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89조의3(확인 면제)

②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문제점

- 화평법상 소량 화학물질로 등록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산안법상 확인의 효력은 1년(제89조 제4항)임에도 화평법상의 등록 효력은 변경등록*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므로
 - 양 법간 효력기한의 불일치로 인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들의 혼란 초래
- * 등록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변경되는 경우 화평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함

□ 개선방안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제89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한(1년간) 적용을 제외토록 함

□ 기대효과

- 양 법간 효력기한을 일치시킴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p>

7.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의 면제 대상 조정 (시행규칙 안 제89조의3)

□ 현행 규정

- 신규화학물질이 일반소비자 생활용인 경우, 연간 수입량이 소량(100kg 미만)인 경우,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결정* 또는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에 등록신청을 해야 함
- **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국외 전량 수출(연간 10톤 이하) 또는 실험·연구 목적 등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면제신청 가능

- ❖ 시행규칙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 제8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 시행규칙 제89조의2(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 시행규칙 제89조의3(확인 면제)
 - ①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

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문제점

○ 화평법 부칙*상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화평법상 등록 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 산안법상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종전 유해법상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법률 제11789호 화평법 부칙 제4조: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유해법상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등 유해성 심사 면제 대상 규정(시행령 제9조)

□ 개선방안

○ 종전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산안법상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면제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들의 부담완화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9조의3(확인 면제) ① (생략)</p> <p>②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u>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u>」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u>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u> 제8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9조의3(확인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89조제1항----- ----- 「<u>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4항----- ----- <u>등록을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u> ----- -----.</p>

8.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시행규칙 제91조)

□ 현행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명칭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 그 명칭이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됨

❖ 법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손질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 시행규칙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차등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 연간 제조·수입량 변경 시 그에 해당하는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명칭만 공표되어 유해성·위험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現) 연간 제조·수입량 구분없이 시험성적서 3종** 모두 제출→ (改)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일부 시험성적서 제출생략 가능***

** 급성독성시험(흡입 또는 경구),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 시험, 소핵시험)

*** 제출생략 가능한 시험성적서

연간 제조·수입량		시험성적서
1톤 미만		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1톤~10톤 미만		소핵시험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
고분자 화합물	10톤 미만	급성독성, 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10톤~100톤 미만	소핵시험
	100톤~1000톤 미만	소핵시험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

□ 개선방안

- 고용부장관이 공포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연간 제조·수입량 이하로 제조·수입한 물질”만을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기대효과

- 연간 제조·수입량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규화학물질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적 용 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

9. 공정안전보고서 보존기간 개선

(시행규칙 제130조의4제3항)

□ 현행규정

- (법률)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상시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으나
 - (시행규칙) 사업주는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공정안전보고서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전 단계부터 폐업까지 해당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전 기간동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지침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서
 -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상시 갖추어 두고 변경 필요시 지체없이 보완*하고 준수·관리하여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8항: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동 보고서 보존기간(5년)을 규정하고 있어 동 보고서의 변경 필요시에도 수정하지 않거나 보존기간 도과 시 폐기 및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발생

□ 개선방안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에서 계속 보존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어 두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동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둠(제5항), 공정 안전보고서 내용 준수(제7항) 및 변경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보완(제8항)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10.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기 단축, 민간 전문가 범위 확대 및 확인생략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130조의6제1항)

□ 현행규정

-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 확인의 종류·시기: ①신규설치: 설치과정 중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각 1회, ②기존설비: 심사후 6개월 이내, ③중대한 변경: 변경완료후 1개월이내, ③중대한 사고(결함): 사고후 1개월 이내
- 민간 전문가*가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화공 관련 교과 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

❖ 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 문제점

-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보고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나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의 확인시기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 이후 최대 6개월 기간동안 문제점이 있어도 개선·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
- * 이미 설치·가동 중인 설비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의 변경 또는 사용량의 증가로 공정안전관리(법 제49조의2) 대상이 된 유해·위험설비
- 중대산업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이 수행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 PSM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내용과 '확인'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동 진단 수행과 더불어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중복 및 행정력 등 낭비 발생
- 사업장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협소하여 민간 전문가 활용도*가 낮은 상태
- * '14년, 사업장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감사를 실시, 공단의 확인을 면제한 실적 없음

□ 개선방안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확인시기를 심사 완료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는 안전보건 진단 등이 수행된 경우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등은 고용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관련 고시에 규정)

-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범위에 관련 자격자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등) 및 화공안전 경력 보유자* 등을 추가

* 확인 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경력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기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이후 확인실시 기간까지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최소화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과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점검하는 ‘확인’과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이 중복 수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력과 사업장의 부담이 완화
-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8.18.)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일 이후 심사를 받은 건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0조의6(확인 등) ①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0조의6(확인 등) ① ----- ----- ----- ----- -----.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
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
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생략)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서 신설>

②·③ (생략)

-----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

----- 사
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 확인을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3개월 ----
3. (현행과 같음)
4. -----

----- . 다만, 법 제49조
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
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1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입력 의무화

(시행규칙 제32조의3 관련 별표 6의5)

□ 현행규정

- 중·소규모 건설현장(3억원~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하)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보건관리비 사용 및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결과보고서를 자체 보존해야 함

❖ 시행규칙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2부는 해당 사업장에 발급하고 1부는 전문지도기관에서 보존해야 한다.

□ 문제점

- 최근 수수료 저가경쟁으로 인해 일부 기술지도 주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미실시하고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 위반사항을 누락하여 기술지도 하는 등 부실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시행규칙 별표 6의5)

□ 개선방안

-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후 작성하는 기술지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현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 전산 시스템(K2B)에 등록*하도록 함

* GPS 정보가 담긴 현장 전경사진, 기술지도 보고서 사진 또는 내용

□ 기대효과

-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기술지도의 주기 준수 및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어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일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6의5] <u>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u></p> <p>1.~5. (생략)</p> <p>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p> <p>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u>결과보고서</u> 3부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u>2부는 해당 사업장에 발급하고 1부는 전문 지도기관에서 보존해야 한다.</u></p> <p>나. (생략)</p> <p>7. (생략)</p>	<p>[별표 6의5] <u>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u></p> <p>1.~5. (현행과 같음)</p> <p>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p> <p>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u>결과보고서</u>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u>해당 사업장에 발급하고 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u></p> <p>나.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1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개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2)

□ 현행 규정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및 관리

- GHS*분류기준을 반영하여 물리적 위험성(16개)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12개)으로 분류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에서 제정한 기준

❖ 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의2와 같다.

❖ 시행규칙 별표 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폭발성 물질, 2)인화성 가스, 3)인화성 액체, 4)인화성 고체, 5)인화성 에어로졸, 6)물반응성 물질, 7)산화성 가스, 8)산화성 액체, 9)산화성 고체, 10)고압가스, 11)자기반응성 물질, 12)자연발화성 액체, 13)자연발화성 고체, 14)자기발열성 물질, 15)유기과산화물, 16)금속 부식성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급성 독성 물질, 2)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3)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4)호흡기 과민성 물질, 5)피부 과민성 물질, 6)발암성 물질, 7)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8)생식독성 물질, 9)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0)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11)흡인 유해성 물질, 12)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 문제점

- GHS분류기준 개정으로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추가되었으나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는 미반영
- 오존층 유해성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관리가 불가함

□ 개선방안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상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로서 '오존층 유해성 물질'을 추가함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89.1월 발표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관리대상 물질(95종)

□ 기대효과

- 오존층 유해성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관리를 통해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유해인자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 16) <생 략>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 12) <생 략> 13) <신 설>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 ----- 가. ----- 1) ~ 16) <현행과 같음> 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u>

1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개선 등

(시행규칙 제81조의4 관련 별표 11의3)

□ 현행 규정

-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13종)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를 그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

- ❖ 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9. (생략)
 - 10. 톨루엔-2, 4-다이소시아네이트
 - 11.~13. (생략)
- ❖ 시행규칙 제81조의4(허용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 ❖ 시행규칙 별표 11의3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m ³	ppm	mg/m ³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30		
4. 벤젠	1	3		
5. 2-브로모프로판	1	5		
6. 석면		0.1개/cm ³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0	30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10.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0.005	0.04	0.02	0.15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70	200	1,080
12. 포름알데히드	0.5	0.75	1	1.5
13. 노말렉산	50	180		

□ 문제점

○ 일부 화학물질의 현행 허용기준은 국제적으로 준용하는 기준*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 국제적 준용기준을 반영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우려 불식 필요

*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제안하는 허용농도

< 산안법상 허용기준과 국제기준 비교 >

허용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산안법)		국제기준(ACGIH)		
	TWA ¹⁾	STEL ²⁾	TWA	STEL	C ⁴⁾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	0.5 mg/m ³	-	0.2 mg/m ³	-	-
벤젠	1 ppm	-	0.5 ppm	2.5 ppm	-
이황화탄소	10 ppm	-	1 ppm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mg/m ³	-	0.01 mg/m ³ , 0.002 mg/m ³ (R) ³⁾	-	-
트리클로로 에틸렌	50 ppm	200 ppm	10 ppm	25 ppm	-
포름 알데히드	0.5	1	(캐나다) 0.3 ppm	-	0.3 ppm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 1일 8시간 작업 기준의 평균 노출농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 15분간의 시간가중 평균 노출값

3) Respirable fraction(R): 호흡성 분진

4) 최고노출기준(Ceiling):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

○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취급시, ‘톨루엔-2,6-다이소시아네이트’와 혼합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한 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가 모호하며

- 국제기준 명칭도 혼합물 형태로 표기하고 있음

< 산안법상 허용기준과 국제기준 비교 >

허용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산안법)		국제기준(ACGIH)			
	TWA	STEL	명칭	TWA	STEL	비고
톨루엔-2,4- 다이소시아 네이트	0.005 ppm	0.02 ppm	톨루엔-2,4- 또는 2,6-다이소 시아네이트 (또는 혼합물)	0.005 ppm	0.02 ppm	- 톨루엔-2,6-다이소시아네이 트는 톨루엔-2,4-다이소시 아네이트의 이성질체*임 - 호흡기 과민성 등 톨루엔 -2,4-다이소시아네이트와 유사한 독성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분자식은 같지만 서로 다른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는 분자

- 유기화합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2가지 단위(ppm, mg/m³)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 간의 환산값이 상이하여 사업장에서 허용기준 적용 시 혼선 유발

□ 개선방안

- 화학물질 6종*의 허용기준 값을 국제수준과 부합하게 개정
 -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의 명칭을 ‘톨루엔-2,4- 또는 2,6-다이소시아네이트’로 변경
- 유기화합물은 ‘ppm’, 금속화합물은 ‘mg/m³’로 허용기준 단위 통일

□ 기대효과

-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선을 통해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8.18.)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m ³	ppm	mg/m ³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2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삭제>		
4. 벤젠		0.5	<삭제>	2.5	
5. 2-브로모프로판		1	<삭제>		
6. 석면			0.1개/cm ³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	<삭제>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10.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다이소시아네이트		0.005	<삭제>	0.02	<삭제>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0	<삭제>	25	<삭제>
12. 포름알데히드		0.3	<삭제>	<삭제>	<삭제>
13. 노말렉산		50	<삭제>		

※ 비 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WA = \frac{C_1 \cdot T_1 + C_2 \cdot T_2 + \dots + C_n \cdot T_n}{8}$$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m³ 또는 개/cm³)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14.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기준 정비

(시행규칙 제102조 관련 별표 14)

□ 현행규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의사인력 기준) 특수검진 업무 담당 의사 자격 요건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개정('08.1.), 다만 개정 전 재직 중인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 *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 업무에 종사한 의사
 - (장비 기준) 장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각종 임상검사 및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장비를 갖추어야 함

3. 장비 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광전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자동 혈수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 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혈액화학검사·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 문제점

- (의사인력 기준) 개정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전문의들은 그동안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산업보건관련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다른 특검기관에서도 동일한 특수검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직장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

○ (장비 기준)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분석장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필수 지정장비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항온수조,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광전광도계

-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한 장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기기(백혈구 백분율 계산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

* 일반적으로 백혈구 백분율 계산 기능은 자동혈구계수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백혈구 계산 기능을 갖춘 자동혈구계수기를 갖춘 경우에는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는 갖추지 않도록 할 필요

- 특수건강진단의 방사선 촬영은 직접촬영 검사를 하도록 규정(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되어 있어, 간접촬영 장비를 갖추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 개선방안

○ (의사인력 기준) 이전 개정('08.1) 이후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시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이직하여도 계속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정('08.1.1) 이전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4.12월 현재 16명으로 파악되므로, 노사누리에 해당 인력을 등록하는 등 지방관서에서 지정업무시 참고토록 할 예정임

- (장비 기준)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경우 필수 지정장비 중 분석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 백혈구 백분율 계산 기능을 갖춘 자동혈구계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 엑스선 촬영기의 경우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
 - * 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함

□ 기대효과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 기준 중 종전 규정에 따른 의사인력의 기관이동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인력의 직장선택의 자유가 확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비기준 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현행화 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6.2.17.)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p> <p>1. 인력기준</p> <p>가. 「의료법」에 따른 <u>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u>. 다만, <u>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u></p> <p>2. (생략)</p> <p>3. 장비기준</p> <p>가.~자. (생략)</p> <p>차. <u>엑스선촬영기(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u></p> <p>라. <u>백혈구 백분율 계산기</u></p> <p>타.~너. (생략)</p> <p>4. (생략)</p> <p>※비고</p> <p>1. (생략)</p> <p>2.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마목의 인력과 <u>제3호 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u></p>	<p>[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p> <p>1. 인력기준</p> <p>가. 「의료법」에 따른 <u>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u></p> <p>2. (현행과 같음)</p> <p>3. 장비기준</p> <p>가.~자. (현행과 같음)</p> <p>차. <u>엑스선촬영기</u></p> <p>라. <u>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타.~너.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비고</p> <p>2. (현행과 같음)</p> <p>2.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마목의 인력과 <u>제3호 마목, 아목, 자목, 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u></p>

IV.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144호(2015. 12. 31. 공포·시행)

1. 계단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개선(안 제13조제2호)

□ 현행규정

-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6. (생략)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난간기둥을 세로로 촘촘히 설치하여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경우 횡으로 설치하는 중간 난간대의 기능은 없음



(난간기둥 사이가 좁고 중간 난간대 설치)

□ 개선방안

-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cm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난간기둥 사이가 좁아 추락 위험 적고, 100kg이상의 강도 유지)

□ 기대효과

-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며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5.12.31.)부터 시행

2. 밀폐공간작업 내 용접작업시 송기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 (안 제629조)

□ 현행규정

- 사업주는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 문제점

-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농도 측정 등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실시한 후 작업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지급·착용해야 함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개선방안

-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의 착용은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지급·착용토록 함

□ 기대효과

-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며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및 근로자의 착용 부담을 완화 함

□ 시행시기

- 공포한 날('15.12.31.)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u></p> <p>② (생략)</p>	<p>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호에 따른 환기 등의 방법으로</u> <u>작업장소를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u> <u>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u> <u>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u></p> <p>② (현행과 같음)</p>